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7-25
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시설의 특성과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반환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시 사용예정일의 60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변경 (제13조제1항)
- 나.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60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규정 마련(제13조제1항)
- 다.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공연대관의 경우 대관료 20% 할증 (별표 제1호가목(8))
- 라. 문화동 증축부분 스튜디오2(2층), 스튜디오3(3층)의 사용료 신설(별표 제1호나목(6))

구 분	스튜디오2	스튜디오3	
사용료	30,000원/1시간	연습	35,000원/1시간
		공연	55,000원/1시간
		행사	85,000원/1시간
		전시	150,000원/1일

- 마. 문화·체육프로그램 이용자 주차요금을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

30분까지 무료로 변경하고 일부 주차료 상향조정 (별표 제1호나목(7))

구 분		변 경 전	변 경 후
관람자 주차요금		- 4시간 3,000원	- 3시간 3,000원
대관자 주차요금	대극장	- 1일 주차료 5,000원 판매 (12시간 기준)	- 1일 주차료 10,000원 판매 (12시간 기준)
	소극장	- 1일 주차료 5,000원 판매 (12시간 기준)	- 1일 주차료 10,000원 판매 (12시간 기준)

바. 기타 문화·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일부기준 변경(별표 제2호나목(1),(2))

○ 문화프로그램

(단위 : 원)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문화강좌프로그램	10,000~30,000	10,000~40,000
문화예술전문과정	신설	40,000~200,000

○ 생활체육프로그램

(단위 : 원)

변 경 전			변 경 후		
중·고생	개인지도	1일 입장	중·고생	개인지도	1일 입장
35,000	30,000 (1시간/1회)	신설	25,000~ 45,000	25,000~ 50,000 (1시간/1회)	3,000 ~ 10,000

#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신설·강화 되는 규제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7. 2. 23. ~ 3. 15. (제출의견 없음)
- 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원안 동의
- 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- 4)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: 원안 동의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, “관리·운영할”을 “관리·운영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76조의 규정”을 “제76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2항”으로, “재위탁 할”을 “재위탁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, “제3항의 규정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대여 할”을 “대여할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다 사용”을 “사용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별표 제2호”를 “별표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개시일 10일 전까지”를 “다음 각 호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사용할 때 : 사용예정일의 10일 전까지  
납부

2. 공연장 및 전시실을 사용할 때 : 사용예정일의 60일 전까지 납부

3.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본 항 제1호 및 제2호의 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: 사용계약 체결 시 납부

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시설”을 “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 60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: 전액반환. 다만 계약금은 제외한다.

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”를 “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“마포구에”를 “구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 본문 중 “제12조제1항의 경우”를 “제1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설치 할”을 “설치할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하게하거나”를 “하게 하거나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사용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]

## 마포아트센터 사용료(대관료, 강습료, 이용료) 종류 및 징수기준 (제12조제1항 관련)

### 1. 시설사용료

#### 가. 일반기준

- (1)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하고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의 기본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하고, 종합체육관, 소체육관 및 그 밖의 시설 기본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한다.
- (2) 토·공휴일의 경우 총 시설사용료에 10퍼센트를 할증 적용한다.
- (3)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- (4)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,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.
- (5) 주차장의 주차료는 개별기준에 따른다.
- (6) 개별기준 중 (1)부터 (6)까지의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.
- (7) 리허설, 준비,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하되,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기본대관료의 100퍼센트를 적용한다.
- (8)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평일 낮 공연은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할인 적용하고,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공연은 기본대관료에서 20퍼센트를 할증 적용한다.
- (9)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,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(은행영업일 기준) 센터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며,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사용할 때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, 공연장 및 전시실을 사용할 때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대관사용자가 사전 매표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 시에는 검인 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(10) 공연장 및 전시실의 기본대관료 할인 및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장기대관(10일 이상의 대관)의 경우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.
    - (나) 1일 2회 이상의 공연에 대하여 1회 공연 추가 시 기본대관료는 20퍼센트 할인 적용한다.
    - (다)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 대관료에 30퍼센트를 할인한다.
    - (라) 2개 항목 이상 할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.
- (11) 부대시설 사용료와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나. 개별기준

### (1) 대공연장(아트홀 맥) 사용료

(단위 : 원/1회)

구 분	클래식,국악	연극,무용,재즈, 오페라	뮤지컬,대중공연	방송(촬영)	행사
기본대관료	625,000	1,000,000	1,250,000	1,500,000	1,750,000

### (2) 소공연장(플레이 맥) 사용료

(단위 : 원/1회)

구 분	클래식,국악	연극,무용,재즈, 오페라	뮤지컬,대중공연	방송(촬영)	행사
기본대관료	250,000	312,500	375,000	500,000	625,000

### (3) 삭제 <2013.12.26>

### (4) 종합체육관 사용료

구분	기본사용료
대관료	50,000원/1시간

### (5) 소체육관 사용료

구분	사용료
대관료	10,000원/1시간

### (6) 그 밖의 시설 사용료

구분	사용료	
스튜디오1 (다목적홀)	30,000원/1시간	
스튜디오2 (문화동 2층)	30,000원/1시간	
스튜디오3 (문화동 3층)	연습	35,000원/1시간
	공연	55,000원/1시간
	행사	85,000원/1시간
	전시	150,000원/1일
연습실	15,000원/1시간	
전시실(갤러리 맥)	15,000원/1시간	

※ 단, 스튜디오3의 경우 식당 등으로 장기 사용허가한 경우의 사용료는 「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정에 따른다.

(7) 주차료

구 분		주 차 료
일 반 차 량		- 기본 30분 1,000원 - 추가 10분당 500원
공연관람 차량		- 3시간 3,000원 - 추가 10분당 500원
시설 대관차량	대극장	- 차량 5대까지 무료 -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10,000원 판매
	소극장 체육시설	- 차량 3대까지 무료 -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10,000원 판매
문화·체육프로그램 차량		-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 무료 -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 무료 - 추가 10분당 500원
그 밖의 차량		-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차량은 “주차 확인”에 한하여 무료 - 업무용차량(수강신청 및 방문 등)은 “주차 확인”에 한하여 1시간 면제(추가 10분당 500원, 1시간 초과시 “주차 재확인”차량 면제) - 10분 이내 회차 차량은 면제

※ 비고

1. 시간제에 의한 주차요금의 상한액은 1일 15,000원으로 한다.
2. 10분 미만의 시간은 10분으로 간주한다.
3.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경차 등 할인(면제) 대상차량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정한 바에 따라 할인(면제)한다.
4. 2개 항목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.
5.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,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6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

## 2. 문화 · 체육프로그램 사용료

### 가. 일반기준

- (1) 나목의 문화강좌 ·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(2) 나목의 문화강좌 · 생활체육프로그램 중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.

### 나. 개별기준

#### (1) 문화강좌 · 생활체육 프로그램

(단위 : 원/월)

구분		사용료
문화강좌프로그램		10,000 ~ 40,000
생활체육 프로그램	성인	30,000 ~ 200,000
	중·고생이하	25,000 ~ 200,000
유아 · 초등생 교육프로그램		25,000 ~ 150,000
유아체능단		60,000 ~ 340,000
문화예술전문과정		40,000 ~ 200,000
기타		· 위 사용료는 월 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 1회부터 주 5회까지 기준임

#### (2) 체육시설 사용료

##### (가) 수영

(단위 : 원/월)

구분	강습료	자유이용		그룹지도
		정기	1일입장	
사용료	25,000 ~ 80,000	25,000 ~ 70,000	1,500 ~ 4,500	100,000 ~ 200,000
기타	· 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(단, 일요일은 제외) · 공휴일의 1일 자유이용은 20퍼센트 할증			

(나) 헬스

(단위 : 원/월)

구분	일반	중·고생	그룹지도	개인지도	1일입장
사용료	35,000~ 50,000	25,000~ 45,000	100,000 ~ 200,000	25,000~ 50,000 (1시간/회)	3,000~ 10,000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,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</li> <li>· 공휴일 1일입장은 20퍼센트 할증</li> </ul>				

(다) 실내골프

(단위 : 원/월)

구분	정기	골프 아카데미	개인지도	1일입장	
				기본1박스	추가 1박스당
사용료	55,000 ~ 100,000	30,000 ~ 100,000	100,000 ~ 150,000 (1시간/1회)	4,000	2,000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초등생/유아 강습은 주2~5회</li> <li>·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,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</li> <li>· 공휴일 1일입장은 20퍼센트 할증</li> </ul>				

3. 독서실

구 분	성 인	중 고 생
월 사용료	30,000원	15,000원
1일사용료	1,000원	500원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관리 및 운영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</u>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<u>관리·운영</u> 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<u>제76조의 규정</u>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</p> <p>2. 3. (생 략)</p> <p>③ <u>제2항의 규정</u>에 따라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<u>재위탁</u> 할 수 있다.</p> <p>④ <u>제1항의 규정</u>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제2항 및 <u>제3항의 규정</u>에 따라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4조(관리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리·운영할</u> ----- -----.</p> <p>1.----- - <u>제76조</u>-----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위탁</u> <u>할</u> -----.</p> <p>④ <u>제1항</u>----- ----- ----- <u>제3항</u>----- -----.</p>

제5조(비용 지원 등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여 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허가)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·③ (생략)

제9조(사용시간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다 사용한 것으로 본다.

제12조(사용료의 징수 등) ① ~

③ (생략)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2호에서 수강료의 범위만 정한 문화·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

①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

제5조(비용 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대여할 -----.

제7조(사용허가) ① -----

-----  
-----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용시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사용 -----.

제12조(사용료의 징수 등) ① ~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별표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3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

① -----

받은 자는 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하여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(생략)
2.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 
가. ~ 라. (생략)

<신 설>

----- 다음 각 호에 따라 -----

1.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사용할 때 : 사용예정일의 10일 전까지 납부

2. 공연장 및 전시실을 사용할 때 : 사용예정일의 60일 전까지 납부

3.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본 항 제1호 및 제2호의 납부 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: 사용계약 체결 시 납부

② -----  
-----  
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 -----  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3.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

제13조의3(할인)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,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1. ~ 9. (생략)
- 10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 우대자 중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개 항목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.

제14조(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그 금액이 제12조제1항에서 정

및 전시실 사용 60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: 전액반환. 다만 계약금은 제외한다.

제13조의3(할인) ① -----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-----

- 1. ~ 9. (현행과 같음)
- 10. ----- 구에 -----

② 제1항에도 -----

제14조(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제12조제1항 -----







터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(10) 기본대관료 할인 및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(가) ~ (라) (생략)

(11) (생략)

나. 개별기준

(1) ~ (5) (생략)

(6) 그 밖의 시설 사용료

구분	사용료
다목적홀	30,000원/1시간
< 신 설 >	
< 신 설 >	
연습실	15,000원/1시간
전시실(갤러리 맥)	15,000원/1시간

< 신 설 >

시설을 사용할 때의 잔금은 사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, 공연장 및 전시실을 사용할 때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대관 사용자가 사전 대표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 시에는 검인 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(10) 공연장 및 전시실의 기본대관료 -----.

(가) ~ (라) (현행과 같음)

(11) (현행과 같음)

나. 개별기준

(1) ~ (5) (현행과 같음)

(6) 그 밖의 시설 사용료

구분	사용료	
스튜디오1 (다목적홀)	30,000원/1시간	
스튜디오2 (문화동 2층)	30,000원/1시간	
스튜디오3 (문화동 3층)	연습	35,000원/1시간
	공연	55,000원/1시간
	행사	85,000원/1시간
	전시	150,000원/1일
연습실	15,000원/1시간	
전시실(갤러리 맥)	15,000원/1시간	

※ 단, 스튜디오3의 경우 식당 등으로 장기 사용허가한 경우의 사용료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정에 따른다.

(7) 주차료

구 분		주 차 료
(생 략)		
공연관람차량		- <b>4시간</b> 3,000원 - 추가 10분당 500원
공연장 대관차량 (대관 기간중)	대극장	- 차량 5대까지 무료 -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<b>5,000원</b> 판매
	소극장	- 차량 3대까지 무료 -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<b>5,000원</b> 판매
문화·체육프 로그램 차량		- <u>회원(1일회원 포함) 프로그램 이용일 3시간 무료 (2개이상 프로그램 회원 4시간 무료)</u> - 추가 10분당 500원
(생 략)		

2. 문화·체육프로그램 사용료

가. (생 략)

나. 개별기준

(1) 문화강좌·생활체육 프로그램

(단위 : 원/월)

구 분	사 용 료
문화강좌프로그램	<b>10,000~30,000</b>
(생 략)	
< 신 설 >	
기 타	· 위 사용료는 월단위 사용료 로서 프로그램별 주1회 내 지 주 5회 기준임  ·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 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 로 정함

(7) 주차료

구 분		주 차 료
(현행과 같음)		
공연관람차량		- <b>3시간</b> 3,000원 - 추가 10분당 500원
시설 대관차량	대극장	- 차량 5대까지 무료 -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<b>10,000원</b> 판매
	소극장· 체육시설	- 차량 3대까지 무료 -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<b>10,000원</b> 판매
문화·체육프 로그램 차량		-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<b>30분 무료</b> - <u>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 무료</u> - 추가 10분당 500원
(현행과 같음)		

2. 문화·체육프로그램 사용료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개별기준

(1) 문화강좌·생활체육 프로그램

(단위 : 원/월)

구 분	사 용 료
문화강좌프로그램	<b>10,000~40,000</b>
(현행과 같음)	
문화예술전문과정	<b>40,000~200,000</b>
기 타	· 위 사용료는 월단위 사용료 로서 프로그램별 주1회 내 지 주 5회 기준임  <u>&lt;삭 제&gt;</u>

(2) 체육시설 사용료

(가) (생 략)

(나) 헬스

(단위 : 원/월)

구분	일 반	중·고생	그룹지도	개인지도	
사용료	35,000~ 50,000	<u>35,000</u>	100,000~ 200,000	<u>30,000</u> (1시간/ 1회)	<신설>
기타	·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,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<신설>				

(다) 실내골프

구분	정기	골프 아카 데미	개인 지도	1일이용		비 고
				기본 1박스	추가 1박스당	
사용료	(생 략)			4000	2000	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,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
기타	· 초등생/유아 강습은 주25회로 하며 1시간 강습, 1시간 자유이용 기준임 <신설> · 공휴일 1일이용은 20퍼센트 할증					

(2) 체육시설 사용료

(가) (현행과 같음)

(나) 헬스

(단위 : 원/월)

구분	일 반	중·고생	그룹지도	개인지도	1일입장
사용료	35,000~ 50,000	<u>25,000~</u> <u>45,000</u>	100,000~ 200,000	<u>25,000~</u> <u>50,000</u> (1시간/1회)	<u>3,000~</u> <u>10,000</u>
기타	·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,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· 공휴일 1일입장은 20퍼센트 할증				

(다) 실내골프

구분	정기	골프 아카 데미	개인 지도	1일입장		비 고
				기본 1박스	추가 1박스당	
사용료	(현행과 같음)			4000	2000	<삭제>
기타	· 초등생/유아 강습은 주25회 ·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,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· 공휴일 1일이용은 20퍼센트 할증					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  
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의결사항(이하 “의안”이라 한다)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 
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  
달방안에 관한 자료(이하 “비용추계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

⇒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문화진흥과 김지영
연 락 처	02-3153-8355